

단독가구인 강세나씨(부양가족 없음)는 2024 년 1 월부터 본인의 노령연금 월 100 만원과 유족연금월 20 만원을 수령하고 있다.

노령연금의 과세대상 연금액은 50 만원, A 급여액은 50 만원이다. 또한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납입한 연금저축펀드계좌에서 2023 년에 300 만 원을 연금으로 인출하였고 2024 년에도 동일한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할 계획이다. 강세나씨가 65 세가 되는 2024 년에 기초연금을 신청한다고 할 때 질문에 답하시오.

공적연금소득을 포함하기 전 강세나씨의 소득인정액은 월 50 만원, 단독가구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13 만원, 기준연금액이 334,810 원이라고 가정한다. 소득세 산정을 위한 인적공제는 1 인당 150 만 원이다.

연금소득공제액

총연금액	공제액(한도900만원)
350만원 이하	전액
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	350만원+350만원 초과금액 X 40%
700만원 초과 1,400만원 이하	490만원+700만원 초과금액 X 40%
1,400만원 초과	630만원+1,400만원 초과금액 X 40%

종합소득세율 : 과세표준 1,400만원 이하인 경우 6.6% (지방소득세 포함)